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- 22호

「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9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상주시 의정비심 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가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2014년 이후 시의회 의원 자체적으로 동결하여 왔던 수당 및 여비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월정수당 인상(안 제3조)
- 나. 여비지급기준 변경(별표1, 별표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

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 _____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 _____
- 연 락 처 : _____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